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43
----------	-----

제출년월일 : 2000. 8. 28.

제 출 자 : 고성군수

1. 개정이유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정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자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함

2. 주요골자

- 가. 화장실을 설치하여야하는 장소 또는 시설(안 제3조)
- 나.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안 제4조)
- 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의 정기점검(안 제5조)

3. 참고사항

- 행정규제 완화 및 자치법규 정비

4. 본 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관계법률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공중화장실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시설
4.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의 휴게소
7.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종합여객시설
8.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9.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10.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11.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전문휴양 및 종합휴양시설
12.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13.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14. 기타 군수가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제4조(위탁관리)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시설점검) 군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2회(상·하반기)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